

하나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일반형2 약관

(시행일자 2017.8.1)

제1조 (목적)

이 회원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회원간에 체결된 하나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하 "상품"이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품가입자 :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중 이 상품의 가입에 동의한 본인 회원
2. 보장기간 : 상품 가입 익일 00:00시부터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 또는 해지된 날의 24:00시까지의 기간
3. 보장사건 : 이 약관 부칙(보장사건별 보장 제공 기준 등)에서 정한 사건
4. 상품수수료 산정 기준일 :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작성 기준일
5.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 (이하 "카드채무액"이라 합니다.) : 상품가입자의 개인 카드로 이용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각 해당 수수료, 이자, 연체료 등을 포함하여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총 채무금액을 말하며, 이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된 해당월 청구금액과 미청구 잔액(해당월에 청구되지 않았지만, 추후 청구될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 연회비 및 부정매출, 금융분쟁의 사유로 회사가 청구 중지한 금액 및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보장채무액 : 보장사건 발생일 직전 청구시점의 청구금액 및 미도래 청구 잔액과 이후 보장사건 발생일까지의 이용금액의 합
7. 결제금액 : 제5호의 카드채무액 중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명기된 해당월 청구금액
8. 의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

제3조 (상품의 성격)

- ① 이 상품은 상품가입자가 매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상품수수료를 결제하고, 상품가입자에게 발생한 보장사건으로 인해 카드이용대금을 즉시 결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장채무액을 면제하거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상품가입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유료 금융상품입니다.
- ② 이 상품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 ③ 이 상품의 가입 및 해지는 상품가입자의 선택사항이며,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카드 이용에는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품의 신청, 개시, 종료)

- ① 회사의 카드회원은 본인에 의한 가입신청서 작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의사 표명,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상품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효력은 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상품개시일)됩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1. 상품가입자가 가입증서에 표시된 보장연령 만 61세를 초과한 때, 이 경우 회사는 보장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상품가입자가 부칙에 의거 사망, 치명적장애 보장 사고가 발생하여 채무면제를 받거나 상품가입자가 보장한도액을 소진하여 보상받은 때, 이 경우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채무면제 또는 보상신청을 접수한 때에 상품계약종료를 상품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제5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 ① 회사는 상품가입 신청시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상품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상품가입자에게 이 약관,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상품명, 상품성격, 상품수수료, 보장내용, 채무면제·유예 신청방법 및 제13조의 가입 전 알릴 의무 등 상품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상품가입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약관,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가입자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제6조 (상품의 철회)

- ① 상품가입자는 이 상품의 가입을 신청한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가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 ③ 상품가입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장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7조 (상품 가입 무효)

상품가입자가 상품가입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품 가입을 무효로 하며 청구 및 결제된 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 1. 나이가 만20세 미만 또는 만61세 이상인 회원이 가입한 경우
- 2.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

제8조 (상품수수료)

- ① 상품가입자는 상품수수료를 매월 결제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보장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 ② 수수료는 상품가입자의 매월 상품수수료 산정 기준일의 카드채무액에 회사가 정하는 일정율(이하 "수수료율"이라 합니다)을 곱하여 매월 청구됩니다.
- ③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상태, 회사의 시스템 문제 등으로 회사가 해당월에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월 수수료와 합산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 ④ 상품가입자가 결제한 수수료는 이 상품상의 보장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5조 내지 제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상품가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⑤ 보장기간 중에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예정일 6개월 전까지 상품가입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⑥ 상품수수료율 변경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까지 계약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상품수수료율 변경예정 통보시 변경일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9조 (상품계약의 해지)

- ① 이 상품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보장사건에 대해서는 이 약관상의 보장이 제공되지 아니 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 계약을 해지합니다.
 - 1. 상품가입자가 해지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한 경우. 단, 이 경우 해지일의 24:00까지 보장이 제공됩니다.
 - 2. 회사가 각 목의 사유로 이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 가.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시정 명령,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해지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나. 상품가입자(그 상속인 포함)가 고의로 보장사건을 발생시킨 때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다. 상품가입자(그 상속인 포함)가 보장 청구를 위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상의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3. 상품가입자가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연속 상품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까지 상품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회사의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 나. 타 신용카드 연체 및 대외 금융기관 불량 회원으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 카드의 분실, 전대환 대출, 법적조치, 현금매출(카드깡), 제3자의 요청
거래중지, 카드 사용한도가 없는 경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라. 기타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단, 카드미사용으로 채무액이 없어 회사에서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 ① 회사는 상품가입자에게 상품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장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다만 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 또는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 ② 회사는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채무면제 보장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환급합니다.
 1. 상품가입자의 보장사건별 보장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리며 회사는 면제된 채무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채무액 면제시는 상품가입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으로 면제됩니다.
 2. 상품가입자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채무액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는 동 금액을 다른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상품가입자(사망시 상속인 포함)에게 환급합니다.
 3. 보장사건별 채무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 (보장사건별 보장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보장기간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채무유예 보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채무를 유예합니다.
 1. 상품가입자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해 드립니다. 상환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해당 결제금액을 결제하지 않으셔도 연체로 처리되지 아니 합니다.
 2. 상품가입자는 제1항의 채무유예 보장을 제공받는 동안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은 이러한 보장이 종료된 이후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전액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일부 결제하신 후에 가능합니다.
 3. 채무유예 보장이 제공되는 동안에는 유예된 채무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

등은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예된 채무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포인트 등이 제공됩니다.

4. 보장사건별 채무유예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 (보장사건별 보장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이 상품의 보장한도액은 상품가입자당 5천만원(채무면제된 금액 또는 채무유예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말함)을 최대 한도로 하고 있으며, 보장사건별 한도액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⑤ 보장청구 가능기간은 보장사건의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제11조 (보장 제외 사항)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1. 상품가입자의 고의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입원. 단, 상품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발생한 자살은 제외합니다.
2.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테러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5. 상품가입자가 고의로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경우
6. 상기 외에 부칙에 별도로 정한 사유
7.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장사건. 단,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보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장청구권의 상실)

상품가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장 청구를 위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이 약관상의 보장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제13조 (상품가입 전 알릴 의무)

상품가입자가 상품 가입을 신청시 회사가 질문하는 병력 사항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야 합니다.

제14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상품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상품가입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사고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을 개시하고 보장사고 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장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품가입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는 약관 변경 예정통보시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시정 명령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 고지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이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각 호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상품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품가입자가 가입한 이 상품의 세부 내용
3. 상품가입자의 채무액 등 신용카드관련 정보
4. 상품가입자의 상해, 질병에 관한 정보

제17조 (분쟁 해결)

- ①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18조 (회사가 제작한 안내장의 효력)

회사가 이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한 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상품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회사는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보장사건별 보장 제공 기준 등

제10조에 따른 보장 내용 및 제11조에 따른 보장제외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 항에 따릅니다.

1. 사망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가입기간중 상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상품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이 상품은 종료됩니다. 나. 이 보장사건 발생일은 사망일이며 채무액 산정일은 사망일로 합니다. 다. 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상품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3을 따릅니다. 바. 상속인의 보장 청구이전에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사망을 인지한 경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채무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치명적 질병 진단 Ⅱ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상품가입자가 가입 기간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 이식수술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받은 경우, 상품가입자의 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단, 암의 경우는 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 ② 위 ①항의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표상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암(상피내암 및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 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별표1]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해당 보장대상자에 한하여 치

병적 질병 진단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 이 보장사건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치명적 질병 진단의 경우는 최초 진단일로 하며, 주요 장기 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 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또는 최초 질병진단일로 합니다.

다. "치명적 질병 진단"의 최초 진단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뇌혈관질환'의 경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한 보고일을 최초 진단일로 합니다.
- ② '허혈성심질환'의 경우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등을 기초로 한 보고일을 최초 진단일로 합니다.
- ③ '만성신장질환'의 경우 각종 검사 등을 기초로 한 보고일을 최초 진단일로 합니다.
- ④ 암(상피내암 및 기타피부암 포함)의 경우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세침흡인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확정된 최초 검사 보고일을 최초 진단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라. 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건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3을 따릅니다.

바.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개시일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 ②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3. 치명적 장애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에게 상품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5천만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치명적 장애"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상품가입자의 중대장해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이 상품은 종료됩니다.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 합니다.

다. 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합니다.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총칙에서 보상 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 ②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③ 기타 이 상품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3을 따릅니다.

4. 장기입원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상품가입 기간중에 보장대상에게 "장기입원"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5천만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장기입원"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입원 개시일로부터 180일내 61일 이상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입원 개시일로 합니다.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3을 따릅니다.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으로 인한 입원
- ②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유로 입원
- ③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5. 자동차사고 진단

가. 보장 제공 기준

① 보장대상자가 상품가입 기간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어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6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5천만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② 이 약관상 "자동차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ㄱ.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운전"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회원이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ㄷ.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③ 위 1항 내지 2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자동차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3을 따릅니다.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자해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② 6종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만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③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 ④ 기타 이 상품 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6. 대중교통사고 진단

가. 보장 제공 기준

① 보장대상자가 상품가입 기간 중에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을 포함합니다)에서 6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
가 종료된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5천만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② 이 약관상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보장대상자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ㄴ. 보장대상자가 대중교통수단에 탑승을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ㄷ. 보장대상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이 약관상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ㄱ. 여객수송용 항공기
- ㄴ.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 ㄷ.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
카 제외)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대중교통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다. 보증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3을 따릅니다.

라. 보증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화재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진단
- ② 대중교통수단을 본인이 직접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④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⑥ 기타 이 상품상의 보증이 중단된 경우

7. 휴대폰 수리비

가. 보증 제공 기준

- ① 보증대상자 명의의 휴대폰이 상품가입 기간 중에 파손된 경우 보증대상자가
부담한 수리비용과 회원의 채무액 중 적은금액을 10만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
니다.
- ② 위 ①항의 "보증대상자 명의의 휴대폰"이라 함은 이 상품 가입시 회사에 고지
하여 등록한 휴대폰을 말 합니다.

나. 이 보증사건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휴대폰 파손 사고 발생일로 합니다.

다. 보증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3을 따릅니다.

라. 보증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① 외관의 파손

그 원인에 관계없이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상의 손
해, 외관의 파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i)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 ii) 변색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

② 보증수리

제조업자의 보증에 따라 수리, 교환이 가능한 손해

- ③ 보장대상자의 고의로 인한 파손

8. 부인과 질병 수술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보장기간 중에 부인과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50만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 ② 이 약관상 “부인과 질병”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위 ①항의 “수술”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단, 수술을 대체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尖端)의 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도 수술로 봅니다.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부인과질병의 진단일로 합니다.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3을 따릅니다.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기타 이 상품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 ② 상품가입 전 진단받은 부인과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우

9. 얼굴성형

가. 보장 제공 기준

- ① 보장대상자가 상품가입 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얼굴표면에 1cm이상의 상처 또는 얼굴피부의 변형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 회원의 채무액을 300만원 한도로 면제해 드립니다. 단, 성형수술에는 레이저

시술을 포함합니다.

- ② 얼굴이라 함은 사람의 눈, 코, 입, 이마, 턱 및 두 뺨과 두 귀 등이 있는 머리의 앞면을 말합니다.
- ③ 위 ①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나. 이 보장사건의 발생일 및 채무액 산정일은 상해사고발생일로 합니다.

다.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3을 따릅니다.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등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얼굴성형
- ② 성형수술로 인한 손상
- ③ '얼굴성형'보장으로 채무액 면제를 받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성형수술
- ④ 보장대상자의 군복무 또는 군사작전 참여 중 발생한 사고
- ⑤ 기타 이 상품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별표 1] 치명적 질병 진단표

구 분	정 의																						
뇌혈관질환	<p>“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92 477 1390 1077"> <thead> <tr> <th>대상이 되는 질병</th> <th>분류번호</th> </tr> </thead> <tbody> <tr><td>1. 거미막밑 출혈</td><td>I60</td></tr> <tr><td>2. 뇌내출혈</td><td>I61</td></tr> <tr><td>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td><td>I62</td></tr> <tr><td>4. 뇌경색증</td><td>I63</td></tr> <tr><td>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td><td>I64</td></tr> <tr><td>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td><td>I65</td></tr> <tr><td>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td><td>I66</td></tr> <tr><td>8. 기타 대뇌혈관 질환</td><td>I67</td></tr> <tr><td>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td><td>I68</td></tr> <tr><td>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td><td>I69</td></tr> </tbody> </table> <p>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p>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8.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8. 기타 대뇌혈관 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10.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허혈성심질환	<p>“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92 1290 1390 1675"> <thead> <tr> <th>대상이 되는 질병</th> <th>분류번호</th> </tr> </thead> <tbody> <tr><td>1. 협심증</td><td>I20</td></tr> <tr><td>2. 급성심근경색증</td><td>I21</td></tr> <tr><td>3. 속발성 심근경색증</td><td>I22</td></tr> <tr><td>4.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td><td>I23</td></tr> <tr><td>5.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td><td>I24</td></tr> <tr><td>6. 만성허혈성심장병</td><td>I25</td></tr> </tbody> </table> <p>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p>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I20	2. 급성심근경색증	I21	3.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4.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I24	6. 만성허혈성심장병	I25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I20																						
2. 급성심근경색증	I21																						
3.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4.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I24																						
6. 만성허혈성심장병	I25																						
주요 장기이식수술	<p>“주요 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기증자로부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또는 골수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기증받아 수혜자에게 이식한 수술을 말합니다.</p>																						
만성신장질환	<p>“만성신장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N18”로 분류되</p>																						

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 ~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0. 림프종 모양 구진증	L41.2

제 6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	------

암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 6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단클론성 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D76.0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2] 부인과질병 수술 분류표

부인과질병	부인과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상피내의 신생물	D00~D09
	2. 양성신생물	D10~D48
	3. 유방의 장애	N60~N64
	4.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N70~N77
	5.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N80~N95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1. 상품가입자 또는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래2.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

가. 보상청구서(회사 양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보상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삭제가능),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나. 사고 입증 서류

사망	- 사망입증 서류(사망진단서 포함)
치명적 장애	- 장애인등록증 - 장애진단서
치명적 질병 진단 II	- 과거 병력확인서(또는 과거 병력확인을 회사에 위임할 경우 인감증명서) - 질병 진단 입증서류 (특정질병진단서, 최초검사 결과지 포함) - 장기 이식수술 입증 서류(수술확인서 포함)
부인과 질병 수술	- 진단서, 수술 입증 서류(수술 확인서 포함)
대중교통사고/자동차사고 진단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장기입원	- 입/퇴원확인서
휴대폰 수리비	- 수비리 내역서(영수증)

얼굴 성형	- 진단서, 수술 입증 서류(수술 확인서 포함)
-------	----------------------------

다. 회사가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3.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2항 나호의 구비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료, 서비스의 해지 및 신용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있습니다.